

##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 공고

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및 「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7.

춘 천 시 장

### 1. 사업명

-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

### 2.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

- 사업기간 : 2026. 3 ~ 12월

- 지원예산 : 155,000천원(국비 62,000 도비 13,950 시비 32,550 자부담 46,500)

※ 총사업비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되, 용자로 대체할 수 없음

### 3. 신청자격

구 분		지 원 자 격
석 재 사업자	채취업	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* 「골재채취법」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봄
	가공업	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
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	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, 사업주 단체

※ 지원계획 상의 사업비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에 해당

※ 관내 임야 내에서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

< 우선 지원 >

-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
-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우수사업자

< 지원제한 기간 >

-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제1항, 「기본규정」 제35조제6항

처분사유	수행배제 기간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	5년
2.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	3년
3. 법령,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	2년

※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, 사업변경, 농림축산식품분야 중복신청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, 사업포기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 (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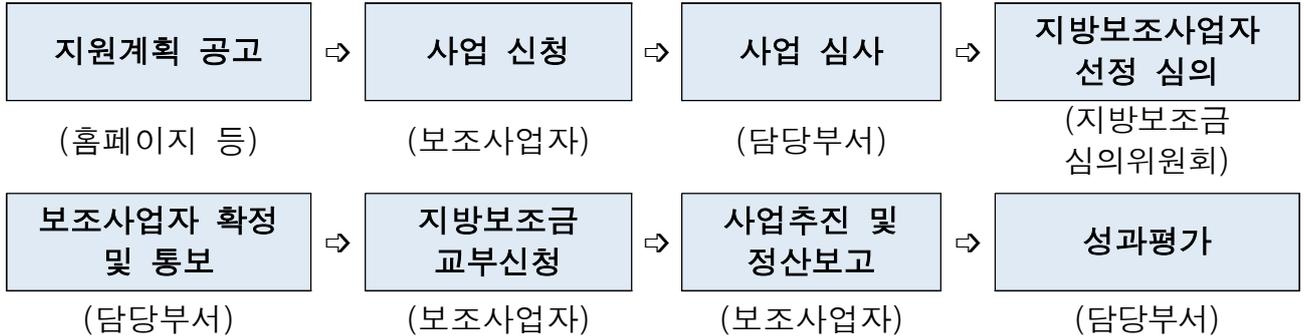
< 유사자금의 지원제한 >

-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원(국비+지방비)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(시에서 실시)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
-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 (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)
  - \* 유사자금 :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(토지, 건축물 등)에 투자되는 것
  - \* 「기본규정」제정 시행일('14.1.1.)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

4. 지원내용

구분	세부내용
석재채취업	미세먼지 흡수·제거시설(대형백필터, 여과포, 비산먼지 덮개, 집진기 부착형 착암기), 분무시설(스프링쿨러, 관정, 분무배관, 살수기), 세륜시설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(방진·방음벽, 와이어쓰), 정확시설(침사지, 배수로)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
석재가공업	미세먼지 흡수·제거시설(흡후드), 부산물 재활용(폐석분 교반기), 정확시설(침사지, 배수로)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(방진·방음벽, 와이어쓰)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
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	미세먼지 흡수·제거시설(노면청소차량),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(방진·방음벽) (해당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조건)

## 5. 지원절차



## 6. 신청서 접수

- 신청기간 : 2026. 1. 7. ~ 2. 6.
- 접수처 :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
- 접수방법 :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 직접 방문

## 7. 제출서류
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소요예산 증빙자료 포함) 각 1부
-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 등록증 또는 골재채취업 등록증
-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구성원, 자본, 경영장부 등)  
※ 선정 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있을 수 있음

## 8. 심사 및 통보

- 심사선정 : 춘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
- 선정기준 : 신청자격·지원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
- 결과통보 :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지

## 9. 지방보조금 지원, 정산 및 평가

- 선정된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원
-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통장에 자기부담금 예치사항과 보조금 결제카드 발급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
-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
- 사업실적 평가 실시(필요 시 현지조사)

## 10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춘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해야 함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시,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
- 본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「보조금법」 제35조 규정 및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[별표4]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
  - \*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·장비 사후관리기간 : 5년
- 보조금 교부신청, 보조사업의 수행,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, 지방보조사업자 제재,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(안전행정부 예규)」, 「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름.
- 문의사항 : 춘천시청 민원담당관 산지전용팀(033-250-4267)

붙임 1. 석재분야 사업 신청 안내 1부.

2.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. 끝.

[붙임1]

<b>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신청서</b>	
<b>사 업 실 행 자</b>	업체명/대표자 성명 :
	법인등록번호 : <span style="float: right;">사업자 등록번호 :</span>
	주소 및 연락처 :
<b>지 원 자 격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석재채취업 :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석재가공업 :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석재가공분야 농공단지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 농공단지 내 농공단지 관리주체, 사업주 단체
<b>사 업 예 정 지</b>	강원도 춘천시 읍면 리 번지
<b>사 업 계 획</b>	○ 지원 금액 : 원(국비 : , 지방비 : , 자부담: ) - 주요 사업 내역 :
<b>토 석 채 취 실 적</b>	○ 최근 3년간 가동실적 : ('23) 톤, ('24) 톤, ('25) 톤 - 최초가동일 : * 2년 미만인 경우 총 가동 일수와 생산량 기재
<b>우 선 지 원 자 격 해 당 여 부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
<p>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          또한,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.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·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 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·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	
2026. . . 신청자 : (인)	
<b>춘천시장 귀하</b>	
<b>첨부</b> 1. 지원자격 확인 서류(석재사업자) 1부. 2.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. 3.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. 4. 사업실행사 일반현황(별도서식 없음) 1부. 5. 사업계획서 1부. *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(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) ② 원가구성 현황 ③ 환경피해 저감효과 ④ 사업추진일정 등 포함 6. 우선지원자격 증명서류 1부.	

